

검 토 보 고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 동 조례안은 1998년 3월 2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음.

□ 제안이유

현재 시행중에 있는 쓰레기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배출방법, 수거체계, 수수료의 징수근거,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의 적용범위를 폐기물관리법상의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정함.(안제3조)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하고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함.(안제4조)
-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요령을 보다 엄격하게 함.(안제5조)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과 준수사항을 규정함.(안제6조, 제7조)
- 음식물쓰레기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시장의 조치사항을 규정함.(안제8조)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와 재질,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에 관해 규정함.(안제9조, 제10조)
-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제1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함.(안제14조)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수집·운반·재활용 등에 관해 규정한 조례안임.
-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등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및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를 적용하여 왔으나,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발생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르고 처리방법이 일반쓰레기와 상이하므로 별도의 조례로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사료되며,

- 한편으로 수도권매립지 실무협의회에서 '99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할 예정으로 있어 그 기한안에 음식물쓰레기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동 조례안의 제정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됨.
- 안제3조에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폐기물관리법상의 생활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정하여 군내면 지역을 제외토록 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및 「과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과 일치시키고 또한 군내면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한 적법 타당한 사항으로 사료됨.
- 안제5조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을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거나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토록 한 것과, 안제4조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이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지역」을 정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요령을 보다 강화하고, 안제6조에서 집단급식소·대형식당 및 점포등을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하여 이들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사항으로 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됨.

- 안제7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정하여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의 제출, 발생및감량·재활용처리실적 관리대장의 작성과 보존, 발생 및 처리 실적을 제출토록 한 것은 감량의무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사료됨.
- 또한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시장이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할 수 있게 한 것과,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시설 또는 감량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토록 한 것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당연한 사항으로 사료됨.
- 안제11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에 전용 봉투의 판매가격과 수수료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해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시의 경우 「과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동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동 조례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가격을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일반용 봉투의 가격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처리방법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처리비용도 상이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전용봉투를 일반 쓰레기봉투와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동 조례에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수수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금번에 상정된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의결·공포된 후 빠른 시일내에 동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제14조 제1항에 동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안에서 정한 쓰레기 배출방법 및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와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그 기준을 별표1에 정해놓고,

동 부과기준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별표1의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아니하다고 보여짐.

- 한편 안제14조 제2항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해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한 바, 법규의 구체적인 명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행에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청문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동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시의 현행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준용토록하여 이를 명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